

# 행 정 자 치 부

## 주 의 요 구

제 목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내 용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르면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9호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 또는 먹는 물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너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7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급수시설 기준을 위반(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하여야 하며, 해당 업자가 1년 이내에 재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가중처분<sup>202)</sup>(영업정지 1개월)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1차 시설개수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처분 후 1년 이내 정기 수질검사에서 재부적합 판정(검사결과 접수한 날)을 받은 경우에는, 2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강원도 원주시는 아래 【표】와 같이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1차 시설개수명령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 정기 수질검사에서 재부적합 판정을 받은 ○○○○ 등 3개 업소에 대해 시설개수명령 기간 중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유로 2차 위반행위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시설개수명령을 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지하수 수질검사 반복 부적합 업소 현황

| 번호 |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부적합<br>처수 | 수질검사<br>부적합 항목                                          | 처분내용 <sup>203)</sup>        | 처분일자          | 시설개수명령<br>조치결과                                                    |
|----|-----------------|------------------------|------------|-----------|---------------------------------------------------------|-----------------------------|---------------|-------------------------------------------------------------------|
| 1  | 일반<br>음식점       | ○○○○                   | 원주시<br>○○면 | 1         | 일반세균 등<br>(2014. 2. 3.)                                 | 시설개수명령<br>(2014. 3. 11.까지)  | 2014. 2. 11.  | 적합 : 2014. 2. 20.                                                 |
|    |                 |                        |            | 2         | 총대장균군<br>(2015. 1. 28.)                                 | 시설개수명령<br>(2015. 4. 2.까지)   | 2015. 3. 2    | 적합 : 2015. 3. 10.                                                 |
| 2  | 식품<br>제조<br>가공업 | ○○<br>○○○              | 원주시<br>○○로 | 1         | 총대장균군<br>(2013. 10. 4.)                                 | 시설개수명령<br>(2013. 11. 14.까지) | 2013. 10. 11. | 부적합 : 2013. 10. 17.<br>적합 : 2013. 11. 6.                          |
|    |                 |                        |            | 2         | 질산성질소<br>(2014. 10. 2.)                                 | 시설개수명령<br>(2014. 11. 12.까지) | 2014. 10. 13. | 부적합 : 2014. 10. 27.<br>부적합 : 2014. 11. 7.<br>자진폐업 : 2014. 11. 24. |
| 3  | 식품<br>제조<br>가공업 | 농업회사<br>법인 주식<br>회사 ○○ | 원주시<br>○○로 | 1         | 불소(3회)<br>(2015. 3. 16.<br>2015. 4. 7.<br>2015. 4. 15.) | 시설개수명령<br>(2015. 5. 19.까지)  | 2015. 4. 20.  | 적합 : 2015. 4. 24.                                                 |
|    |                 |                        |            | 2         | 불소(2회)<br>(2016. 3. 2<br>2016. 3. 9.)                   | 시설개수명령<br>(2016. 4. 4.까지)   | 2016. 3. 3.   | 적합 : 2016. 3. 17.                                                 |

202) 별표23(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 관련),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6. 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03) 원주시보건소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업체에 현장 출장하여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 1년 이내 재차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중단 조치를 하고 시설개수 등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영업을 재개하도록 함.